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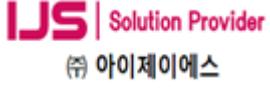
## 목 차

- 제 1 장 주 주
- 제 2 장 이사회
- 제 3 장 감사기구
- 제 4 장 이해관계자
-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제 6 장 부 칙

###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 내용
0	2024.01.01	2024.01.01	기업지배구조헌장 최초 제정
1			
2			
3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직 책	책 임	팀 장	사업부장	대표이사
성 명	김 형 식	박 준 배	김 기 영	구 준 모
서 명	김형식	박준배	김기영	구준모

 (주)아이제이에스	<h1>기업지배구조헌장</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2 / 7

## 전 문

(주)아이제이에스(이하 "회사"라 한다)는 인간 존중, 환경 중시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 · 사회적 회사 가치 증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회사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촉진해 사회적 신뢰와 기업가치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주주이익 증진과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사회와 감사기구 구성 · 운영을 통해 투명 · 책임경영을 확립하여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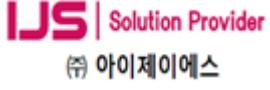
## 제1장 주 주

### 제 1 조【 주주의 권리 】

-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인 합병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와 종류별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주주는 보통주 1주 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h1>기업지배구조헌장</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3 / 7

된다.

3.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 3 조【 주주의 책임 】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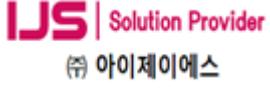
## 제2장 이사회

### 제 4 조【 이사회의 기능 】

1.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2.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 경영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 이사회는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 · 관리 · 감독한다.
4.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1.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3.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리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h1>기업지배구조헌장</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4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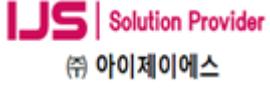
4.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감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5.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는 특정 성별, 연령, 종교, 국적,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 등 기타 다양성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7. 회사는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6 조【 사외이사 】

1.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임 단계에서 확인하고 공시해야 한다.
3.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6.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 7 조【 이사회의 운영 】

1. 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 · 운영한다.
3.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각 이사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제이에스	<h1>기업지배구조헌장</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5 / 7

## 제 8 조【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 9 조【 이사의 책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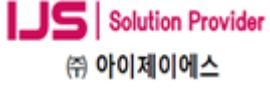
1.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이사 자신의 개인적 · 영업적 · 직업적 이해에 직 · 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심의나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3장 감사기구

### 제 10 조【 감사위원회 】

1.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1인은 재무, 회계 등의 감사업무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2. 감사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야 한다.
4.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외부감사인 】

	<h1>기업지배구조헌장</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6 / 7

-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이해관계자

### 제12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

- 회사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투자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

-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제14조【 공시 】

-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b>IJS   Solution Provider</b> ㈜ 아이제이에스	<h1>기업지배구조현장</h1>	문서구분	ESG
		영역	Governance
		개정차수	0
		페이지	7 / 7

2.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제15조【 기업 경영권 시장 】

-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부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현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